

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1. 실증특례 지정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
- 유효기간 : 2023.10.04.~2025.10.03
- 해당 기술·서비스의 내용 :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판·구매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

2. 이용자 유의사항

- (지역) 전국 어디서든 거래주체 간 거래
- (이용주체) 농산물 도매거래 사업자 간 거래
 - * 단, 농산물의 안정적인 거래 확보를 위해 각 거래주체는 각각 “온라인 도매판매자”와 “온라인도매구매자”로 승인 받아야 함
- (품목) 청과부류, 축산부류 및 양곡부류 중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품목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

3. 이용자 보호방안

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, 총보상한도 5억원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, 총보상한도 없음
- 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, 총보상한도 20억원
- 이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

4.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

- 없음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(지정조건 변경)

| 지정번호 | 2023-19-1호 | 지정연월일 (지정조건 변경일) | 2023년 9월 27일(2024년 3월 22일)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회사명(성명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|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06-82-00944 | | | | | | | |
| |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| | | | | | | | |
| | 대표자 김춘진 | | | | | | | | |
| 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 | 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(주요내용)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물류형식(선물류, 후거래)에서 선거래, 후물류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판·구매자가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| | | | | | | | |
| 유효기간 |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| | | | | | | | |
| 지정 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특례내용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'온라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' 할 수 있도록 2년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(실증범위) 청과류, 축산물, 양곡류, 가공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참여주체들이 거래상대방, 거래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전국 단위로 거래 <p>· 추후 거래부류 확대(변경)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 후 진행</p> <p>< 실증 거래참여자 ></p> <table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판매자</td><td>산지조직(APC*, 농업법인 등), 도매시장법인, 공판장, 시장도매인 등</td></tr><tr><td>구매자</td><td>중도매인,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, 식자재업체, 가공업체 등</td></tr></tbody></table> <p>* APC: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(농산물산지유통센터)</p> | | | 구분 | 내용 | 판매자 | 산지조직(APC*, 농업법인 등), 도매시장법인, 공판장, 시장도매인 등 | 구매자 | 중도매인,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, 식자재업체, 가공업체 등 |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
| 판매자 | 산지조직(APC*, 농업법인 등), 도매시장법인, 공판장, 시장도매인 등 | | | | | | | | |
| 구매자 | 중도매인,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, 식자재업체, 가공업체 등 | | | | | | | | |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